

1. 개정이유

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,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·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와 관련,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6(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)에 따라 성능시험 대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내용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능시험대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내용 및 보고 절차 신설(안 제7조의10)
- 나. 결함기술분석위원회의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심의사항에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추가(안 제9조의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부, 0실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5”를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6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5”로, “제6장의2 및 제7장”을 “제6장의2, 제7장 및 제8장의2”로, “시정 및 성능시험”을 “시정,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”로 한다.

제7조의10부터 제7조의12까지를 각각 제7조의11부터 제7조의13까지로 하고,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10(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)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(이하 “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56조의 16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,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검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

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규칙 제56조의1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“제작결함조사 및”을 “제작결함조사,”로, “사항”을 “사항 및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	<p><u>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규칙 제56조의1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
<u>제7조의10 ~ 제7조의12 (생략)</u>	<u>제7조의11 ~ 제7조의13 (현행 제7조의10부터 제7조의12까지와 같음)</u>
<p>제9조의3(결합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)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, <u>제작결합조사</u>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<u>사항</u>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결합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의3(결합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) ① ----- ----- <u>제작결합조사</u>, ----- ----- <u>사항 및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